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1051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두진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2. 15.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12738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8. 5. 17. 접수 제222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고모인 C이 2018. 1. 1. 치매 진단을 받은 사정을 언급하며 C은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 아들인 L이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는 위 신용카드 발급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C의 배우자인 망 K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은 C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15285호로 신용카드대금 15,396,524원 및 그 중 14,586,6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2018. 10. 2. 그대로 확정된 점,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스스로도 C이 치매를 진단받은 후인 2018. 5.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만일 C이 의사무능력자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 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전부터 채무자 C의 배우자인 K에 대한 채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정호, 판사 신옥영

별지

목 록

1. 대전 동구 M 대 164.4㎡

2. 대전 동구 M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N

벽돌조및시멘트벽돌조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1.65㎡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지하실 8.91㎡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슬래브지붕단층 부속건물1㎡. 끝.

